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석기 의원 (대표)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92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6일  
발 의 자 : 전석기 의원 (1명)  
찬 성 자 : 김창원, 우형찬, 김춘례,  
채유미, 김경우, 신정호,  
권수정, 이성배, 김소양,  
김화숙, 최기찬, 조상호,  
이승미, 김인호, 최웅식,  
김상훈, 박기재, 임종국,  
추승우, 오현정, 이정인,  
김소영 의원 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, '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(안전총괄본부→안전총괄실)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면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.(안 제2조제1호)
- 나.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. (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)
  -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: “12월1일부터” → “11월15일부터”
  -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: “15일”→ “10일”
- 다.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. (안 제11조제4항, 안 제12조제3항, 안 제31조제1항)
  - “안전총괄본부장” → “안전총괄실장”
  - “안전총괄본부” → “안전총괄실”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”을 “자연재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“12월 1일”을 “11월 15일”로 한다.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총괄본부장”을 “안전총괄실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안전총괄본부장”을 “안전총괄실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15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안전총괄본부”를 “안전총괄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사회재난 피해신고서

※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
|------|-----|------|
|------|-----|------|

### 1. 신고인 정보 \* 피해자와의 관계 [ ] 본인 [ ] 부모 [ ] 형제 [ ] 기타( )

|    |  |        |     |
|----|--|--------|-----|
| 성명 |  | 주민등록번호 | -   |
| 주소 |  | 휴대전화번호 | - - |

### 2. 피해자 정보 \*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.

|            |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성명         |   | 주민등록번호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주소         |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주거 형태      | 소유자(실거주) [ ], 소유자(미거주) [ ], 세입자 [ ], 공공임대 세입자 [ ]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   | 휴대전화  | - -    | 통신사명 [ ]KT [ ]SKT [ ]LGU+ [ ]기타 | 가입자정보              | 성명:<br>생년월일: |
|            | 유선전화  | ( ) -  | 통신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입자정보              | 성명:<br>생년월일: |
| 세대주 여부     | [ ] 세대주, [ ] 세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가족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명 (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) |              |
| 고등학생 수     | ( ) 고등학교 명  |        | [비전문계 / 전문계]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도시가스 사용 여부 | 여 [ ], 부 [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가입자명: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: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계좌번호       | 은행명:  | 계좌번호:  | 예금주: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# 3. 피해내용

|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|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|-----|---|---|
| 피해발생 일시 |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|   |
| 피해발생 장소 |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|   |
| 인명 피해   | 신고          | [ ] 사망·실종, [ ] 부상(부상 정도: , 치료기관명: )<br>[ ] 사업피해(휴업 [ ] / 폐업 [ ] / 실직 [ ]) |     |     |   |   |
|         | 확정          | [ ] 사망·실종, [ ] 부상(부상 정도: ), [ ] 사업피해(휴업 [ ]/폐업 [ ]/실직 [ ])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|   |
| 시설 피해   | 시설명         | ①   | ②   | ③   | ④ |   |
|         | 총면적(소유+임차)  | ①   | ②   | ③   | ④ |   |
|         | 면허·허가·등록 번호 | ①   | ②   | ③   | ④ |   |
|         | 피해 물량       | 신고  | ①   | ②   | ③ | ④ |
|         |             | 확정  | ①   | ②   | ③ | ④ |
|         | 피해 구분       | ①   | ②   | ③   | ④ |   |
|         | 피해 원인       | ①   | ②   | ③   | ④ |   |
| 용자신청 여부 | [ ]         | [ ]   | [ ] | [ ] |   |   |

### 4. 확인사항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동일세대 신고 여부      | 여 [ ], 부 [ ] | 내용: |
| 타 시·군·구 피해신고 여부 | 여 [ ], 부 [ ] | 내용: |

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  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○○구청장 또는 동장 귀하





총괄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⑤ (생략)

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、

- ② (생략)
- ③ 시의 안전총괄본부장,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④ ~ ⑨ (생략)

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

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、③ (생략)
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총괄본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- ② ~ ④ (생략)

총괄실장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、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 안전총괄실장 ---
- 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

① ----- 10일 -----

- 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-----

----- 안전총괄실 -----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